

□ 우대사항 적용기준(채용공고일(2025.10.14.) 기준 유효한 경우 적용)

-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 만점 중 최대 10점 이내 가점 부여
-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에 대하여 적용
 - * 우대사항 적용 전 취득점수가 각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(과락)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(가점) 미적용(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)
 - *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중복 가산하되, 최대 10점 이내로 인정
- 우대사항 입사지원 시 지원자별 해당 내용만 기재하고, 검증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(예비합격자 포함)에 한하여 제출
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적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

< 우대사항 >

구분	우대사항	검증방법	우대가점 (100점 만점 기준)	
			서류	면접
1	취업지원대상자	▶대상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▶증빙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▶적용 :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*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*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	5~10점	5~10점
2	장애인	▶ 대상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본인) ▶ 증빙서류 : 장애인 증명서	5점	5점